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보고서

2020. 9. 24.

행정재경위원회

의안 번호	304
----------	-----

###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20. 9. 4. 강남구청장(세무관리과)

나. 상정의결

- 제288회 강남구의회 임시회 행정재경위원회 제2차 회의 (2020. 9. 18.)  
“원안가결”

### 2. 제안설명 요지(기획경제국장 : 김희주)

가. 제안이유

-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 확대(안 제6조제2항)
-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신설(안 제7조)
-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 신설(안 제8조)
-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안 제9조)

## 다.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83조
-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없음
- 합 의 : 기획예산과 협의
- 기 타 :
  -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 입법예고(2020. 5. 29.~ 6. 18.) 결과, 특이할 사항 없음
  -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3. 검토보고 요지(전문위원 : 구경남)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sup>1)</sup> 신설과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제62조의2제6항<sup>2)</sup> 및 제83조제1항제2호<sup>3)</sup>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1)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①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이 조에서 “이의신청인등”이라 한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변호사, 세무사** 또는 「세무사법」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인회계사**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이의신청인등의 「소득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종합소득금액과 소유 재산의 가액이 각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일 것
  2. 이의신청인등이 법인이 아닐 것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고액·상습 체납자 등이 아닐 것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청구 또는 신청일 것
  5.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및 레저세가 아닌 세목에 대한 청구 또는 신청일 것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지체 없이 대리인을 선정하고,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등과 대리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권한에 관하여는 제93조제4항을 준용한다.
- ④ 제1항에 따른 대리인의 자격, 관리 등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12. 31.]

영 제62조의2 규정에서는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 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려는 것임. 또한 영 제83조에 따라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증원하려는 것임.

○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제목은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정수 등)’ 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제2항 중 위원 정수를 법령에서 정한 최대 정수인 19명 이내에서 조례로 6명을 더 늘려 25명으로 구성하려는 사유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안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는 신설규정으로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4) 각 목의 소유 재산의 평가는 영 제62조의2제6항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바 「지방세법」 제4조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으

2)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 재산의 평가 방법, 대리인의 임기·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 방법·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3)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83조(지방세심의위원회의 구성 등)** ① 지방세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구성한다.

2. 시·군·구에 두는 지방세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다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의 정수를 6명의 범위에서 더 늘릴 수 있다.

4)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② 법 제93조의2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2. **소유 재산의 가액의 경우:** 다음 각 목에 따른 재산(배우자 소유 재산의 가액을 포함한다)의 평가 가액 합계액이 5억원. 다만, 지역 실정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조례로 달리 정할 수 있다.

가. 「지방세법」 제6조제2호에 따른 부동산

나.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회원권

다. 「지방세법 시행령」 제12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승용자동차

5) 지방세법

**제4조(부동산 등의 시가표준액)** ① 이 법에서 적용하는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시가표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시된 가액(價額)으로 한다. 다만, 개별공시지가 또는 개별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같은 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제공한 토지가격비준표 또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사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하고, 공동주택가격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로 소유 재산의 평가방법을 정하려는 것으로 세부적인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안 제8조(선정대리인 신청·통지 등)는 신설규정으로 청구인등 중 선정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신청서 제출, 선정대리인을 규칙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통지,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도록 한 것은 행정내부적인 사항으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것은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 안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는 신설규정으로 제1항에서는 선정 대리인이 민감한 납세자 정보를 취급함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규정으로 보이고 제2항 중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고 규정한 것은 선정 대리인으로써 애써준 점을 감안한 보상적 성격의 규정으로 이해됨. 다만, 다른 조례에서는 위원 위촉 시 우대하는 규정이 없는 바 적절한 것인지 살펴 볼 필요는 있다고 보여짐. 단서조항에서는 징계처분 등을 받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외한 것은 적절한 규정으로 판단됨. 제3항에서는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보이나 금액에 대한 설명은 필요해 보임.

- 안 부칙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의 규정은 선정 대리인 시행에 따른 적용시점을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보임.

---

## 지방세법 시행령

**제3조(공시되지 아니한 공동주택가격의 산정가액)** 법 제4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지역별·단지별·면적별·층별 특성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4조(건축물 등의 시가표준액 결정 등)** ① 법 제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과세대상별 구체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방식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1. **건축물:** 「소득세법」 제9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산정·고시하는 건물신축가격기준액에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적용한다.

가. 건물의 구조별·용도별·위치별 지수

나. 건물의 경과연수별 잔존가치율

다. 건물의 규모·형태·특수한 부대설비 등의 유무 및 그 밖의 여건에 따른 가감산율(加減算率)

2. (이하 생략)

4. 질의 및 답변 요지 : “생략”

5. 토론 요지 : “생략”

6. 심사결과 : “원안가결”

7. 소수의견의 요지 : “없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 강남문화재단 사무실 이전 관련 공유재산 무상사용 동의안. 끝.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304
----------	-----

제출년월일 : 2020. 9. 4.  
제출자 : 강남구청장  
제출부서 : 세무관리과

## 1. 제안이유

「지방세기본법」의 개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납세자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이의신청 등 불복업무를 무료로 대리하는 대리인 선정제도가 신설됨에 따라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 신청방법 및 절차 등 제도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 확대(안 제6조제2항)
- 나. 선정 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는 납세자의 판단 기준인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조항 신설 (안 제7조)
- 다. 선정 대리인 신청방법 및 통지에 관한 조항 신설 (안 제8조)
- 라. 선정 대리인의 의무 및 우대사항에 대한 조항 신설 (안 제9조)

##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별첨
  - 「지방세기본법」 제93조의2
  -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의2, 제83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예산과와 협의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0. 5. 29.~2020. 6. 1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규제심사 : 심사대상 규제사무 없음

(4) 부패영향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5) 성별영향분석평가 : 특기할 사항 없음

## 조 례 제 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 정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에게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이 추천한 선정 대리인을 규칙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불복청구·대리인 지정일자·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 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거나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선정 대리인에 관한 적용례) 제7조부터 제9조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전에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또는 이의신청을 하고 이 조례 시행 이후 대리인 선정을 신청한 경우에도 적용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생략)	제6조(지방세심의위원회)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영 제8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세심의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25명 이내로 한다.
<신 설>	제7조(소유 재산의 평가방법) 영 제62조의2제2항제2호 각 목의 소유 재산 평가는 「지방세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다.
<신 설>	제8조(선정 대리인 신청·통지 등) ① 대리인이 없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인 또는 이의신청인(이하 ‘청구인등’이라 한다.) 중 법 제93조의2 및 영 제62조의2제1항에 따라 선정 대리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규칙에서 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이 법 제93조의2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영 제62조의2제5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의 미리 위촉

한 사람 중에서 선정 대리인을 선정할 수 있도록 서울특별시장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서울특별시가 추천한 선정 대리인을 규칙에 따라 청구인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인 등의 불복청구서 등 관련 서류를 지체 없이 선정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권리구제에 필요한 사항을 협조하여야 한다.

⑤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이 지정된 경우 청구 또는 신청일자 · 불복청구 · 대리인 지정일자 · 결정내용 등을 규칙에 따라 기록 · 관리하여야 한다.

<신 설>

제9조(선정 대리인의 의무 · 우대

등) ① 선정 대리인은 불복대리과정에서 알게 된 납세자에 관한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그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②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 활동이 우수한 사람에게 표창을 하

거나 지방세 관련 위원회 위원 위촉 시 우대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변호사법」 제90조 및 제91조에 의한 징계처분 또는 「세무사법」 제17조에 의한 징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2. 이해관계인으로부터 금품·향응을 제공받거나 청탁 또는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하는 등 그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3. 그 밖에 제1호부터 제2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③ 구청장은 선정 대리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선정 대리인에게 실비변상적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생략)

제10조 (현행 제7조와 같음)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강남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비용발생 요인

- 선정대리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실비변상적 수당

##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7억원 미만인 경우. 다만, “한시적” 이란 사업기간 1년 이하의 사업을 말한다.

## 3. 미첨부 사유

- 구세 이의신청 등 예상 건수 40건 이하로 추정 됨(전년도 36건)
  - 「서울특별시 강남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제1호에 의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3억원 미만에 해당하므로 비용추계 작성을 생략함
- ※ 수당 : 건당 15만원(서울시 세제과 산정)

## 4. 작성자

- 세무관리과 지방세무주사보 임미정(02-3423-5602)